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20. 08

진 도 군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필요성

○ 농어촌도로 정비를 통한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 도모

– 인근주민 및 관광객(리조트 등)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한 주변 관광지 이용여건 개선

○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 진도군 발전 구현

– 진도군의 대내외적 관광이미지 제고, 지역 명소화, 주변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지역 인지도 향상 등 연계파급효과 극대화

– 세월호 사고 여파로 줄어든 관광객 유인 및 소득·판매 제고

–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을 통하여 지역특산품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소공연장 조성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및 지역축제 등 관광활성화 도모

○ 추가적인 민간투자 여건 조성 마련

– 대규모 리조트사업 추진과 연계한 관련사업 추진여건 조성(먹거리 음식, 볼거리, 살거리 등 다양한 사업수요 발생)

1.2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 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파. 특정 지역의 개발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2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공개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14일 이상 공개하는 바임.

<표 1.2.2-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2017. 11. 16 :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부)

○ 2017. 12. 28 :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 2018. 01. 04 :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 승인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8-2호)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L=8.7㎞, A=8,635㎡)

○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전라남도)

- 대상지역 : 전라남도 22개시·군
- 발전촉진형 사업 개소수 : 117개소(기존 64개소, 신규 53개소)

시도	구분	총계		기존사업		신규사업		신규사업 국비신청	비고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합계		117	3,409,635	64	2,866,050	53	543,585	483,759	
진도	신규·기존	5	376,790	2	366,790	3	10,000	19,190	

○ 진도군 지역개발계획

구 분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비고
총 계		5개		-	376,635	
기존	소계	5개		-	376,635	
	1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A=558,765㎡	2016~2022	350,800	
	2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L=8.7㎞, A=8,635㎡	2018~2021	15,990	
신규	3	임회면 귀성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L=1.4㎞, B=10.5m	2018~2024	3,000	
	4	의신면 운림삼별초 공원 정비사업	A=28,580㎡	2020~2027	4,000	
	5	진도읍 운림산방 연결도로 위험구간 정비사업	L=0.6㎞, B=17m	2019~2020	3,000	

○ 2020. 05. 22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0. 07. : 평가항목결정공개(예정)

○ 2020.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수렴(예정)

○ 2020.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요청(예정)

○ 2020.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예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

추진절차	관련 규정	행정사항
개발기본계획 구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사업면적 6만㎡이상**(해당사항 없음)** ◦ 평가준비서 심의 ◦ 30일(보완기간, 공휴일은 제외)
↓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14일 이상 게시 ◦ 행정기관 정보통신망(진도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제출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 진도군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 의견수렴 주관기관 : 진도군 ◦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 진도군,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 **주민의견수렴(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기준)** – 공람·공고 :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14일 이상 –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 주민의견수렴(환경영향평가법 기준) – 공람·공고 : 중앙, 지방일간지 20일 이상 –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 7일 전 신문 공고 – 의견제출 :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요청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 진도군 → 전라남도 → 영산강유역환경청
↓		
검토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	◦ 영산강유역환경청
↓		
협의의견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 30일(연장시 40일)(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 영산강유역환경청 → 전라남도 → 진도군
↓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3항~제4항	◦ 진도군
↓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 조치일 또는 조치계획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 진도군 → 전라남도 → 영산강유역환경청

1.4 계획의 내용

1.4.1 계획명

○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1.4.2 계획범위

○ 공간적 범위

– 위　치 :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637번지 일원

– 면　적 : 27,704㎡

• 농어촌도로 : L=1.9㎞, B=2.0m, A=20,949㎡

• 로컬푸드 판매장 및 소공연장 : A=6,755㎡

○ 시간적 범위

– 2018년 ~ 2021년

1.4.3 계획수립권자

○ 진도군수

1.4.4 계획승인권자

○ 전라남도지사

1.4.5 사업비

○ 6,000백만원(국비 5,840백만원, 지방비 160백만원)

1.4.6 토지이용계획

○ 국도 18호선(진도대로)에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개선을 통하여 주요 관광지(대명리조트)간 가교 역할 수행

○ 진입도로가 좁고 일자형이 아닌 곡선형으로 되어 있어 차량 교행이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여건 개선

○ 관광자원 및 축제 등 자연·문화자원의 연계방안으로 문화공연 활성화사업, 지역의 주력 특산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판매시설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27,704	100.0	
① 농어촌도로 정비	20,949	75.6	①~⑥
② 로컬푸드 판매장 및 소공연장	6,755	24.4	⑦, ⑧

구 분	사업내용
①	도로폭원확장
②	아스팔트숭상포장
③	잔디심기, 배수로
④	초화류식재
⑤	낙석방지책
⑥	조경석쌓기, 도로확장
⑦	포컬푸드판매장, 소공연장
⑧	주차장

<그림 1-1> 인공위성 현황도

<table>
<tr><td> </td><td> </td></tr>
<tr><td>① 도로폭원확장 시점부</td><td>① 도로폭원확장 종점부</td></tr>
<tr><td> </td><td> </td></tr>
<tr><td>② 아스팔트 숭상 포장</td><td>③ 잔디심기, 배수로</td></tr>
<tr><td> </td><td> </td></tr>
<tr><td>④ 초화류 식재</td><td>⑤ 낙석방지책</td></tr>
<tr><td> </td><td> </td></tr>
<tr><td>⑥ 조경석쌓기, 도로확장</td><td>⑦ 로컬푸드판매장 및 소공연장</td></tr>
</table>

<사진 1-1> 사업지구 현황사진

구 분	사업내용
①	도로폭원확장
②	아스팔트숭상포장
③	잔디심기, 배수로
④	초화류식재
⑤	낙석방지책
⑥	조경석쌓기, 도로확장
⑦	포컬푸드판매장, 소공연장
⑧	주차장

<그림 1-2> 사업지구 위치도

제 2 장 대안의 설정

2.1 대안 설정 · 분석

2.1.1 대안 설정

○ 본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의 대안설정은 다음과 같이 검토함.

<표 2.1.1-1> 대안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안	선정(제외)사유
계 획 비 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 행정계획수립(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환경적인 비교 분석에 따른 대안 선정
수 단·방 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 본 사업은 기존 도로의 확·포장 및 도로 정비사업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대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수 요·공 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수요·공급계획 기 확정 안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계획지구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 입지, 구역계 기 확정 안
시 기·순 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 (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도입여부에 따른 대안 선정

<표 2.1.1-2> 대안별 설정 개요

대안종류		대안내용	비 고
No Action		○ 사업계획 미수립	계 획 비 교
Action		○ 사업계획 수립	
	대안 I	○ 기타 : 비점오염물질 저감방안	기 타
	대안 II		

2.1.2 대안별 검토내용

가. “계획비교” 대안 검토

○ 행정계획수립(Action) 및 행정계획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1.2-1> “계획비교” 대안 검토내용

평가영역	계획 미수립시(No Action)	계획 수립시(Action)
토지이용 측면	○ 기반시설 미설치로 지역 주민 불편	○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수자원 이용측면	○ 오염원 발생 없음	○ 로컬푸드 판매장 및 소공연장 설치로 오수발생 증가가 예상됨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 생태계 변화없음	○ 농어촌도로 확·포장, 로컬푸드 판매장 및 소공연장 설치에 따라 일부 농경지 훼손 및 변화가 예상됨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지형의 변화가 없음	○ 농어촌도로 확·포장, 로컬푸드 판매장 및 소공연장 설치에 따라 일부 지형의 변화가 예상됨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미치는 영향	○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아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가능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운영시 오수발생에 따른 오염물 발생이 예상됨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 로컬푸드 판매장 및 소공연장 설치에 따라 경관으로의 변화가 예상됨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과 장비투입시 소음·진동 및 하류 하천에 부유물질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
선정안		○
종합평가	○ 계획 미수립시 자연환경 측면에서 유리하나, 토지이용 및 자원 이용 등 주요 관광지(대명리조트)와의 활용성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짐. 따라서, 주민의 주거환경(도로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로컬푸드 판매장 및 소공연장 등)을 확충하여 농가소득·편의증대 등 지역기반 강화 등 토지이용 측면에 유리한 **계획 수립(Action)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수단·방법” 대안 검토

○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기법 도입에 따른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업지구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도입 트랜드를 반영하여 우수 일시 유출보다는 단지내 지하 침투 통한 지하수량 확보가 가능하고 초기 강우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한 하류부 홍수유출량 일시 증가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Ⅰ”이 적정 대안으로 판단됨.

<표 2.1.2-2> “수단·방법” 대안 검토

구 분	대안 Ⅰ	대안 Ⅱ
개요	○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도입 – 법면 녹화 – 주차장은 배수성이 좋은 친환경적 투수포장(잔디, 자갈, 유공성블럭 등) 계획	○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도입 일부 반영 – 현상태 방치 – 주차장 : 아스콘포장
장점	○ 녹지 확보 통한 우수 일시 유출보다는 단지내 지하로 침투 유도 가능 ○ 초기 강우로 인한 비점오염물질 저감 가능 – 투수성포장 : BOD 75%, T-N 83%, T-P 65% 저감	○ 주차장 아스콘포장으로 우기시 토사유출 영향 최소화 가능 ○ 주차장 포장 유지관리 용이 ○ 설치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가능
단점	○ 시설물 설치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부담	○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우수 일시 유출량 증가, 비점오염물질 유출 증가 ○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도입 트랜드 미반영 사항
선정안	○	
종합평가	○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기법 도입 트랜드를 반영하여 우수 일시 유출보다는 단지내 지하 침투 통한 지하수량 확보가 가능하고 초기 강우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한 하류부 홍수유출량 일시 증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1”이 적정 대안으로 판단됨.	

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환경요인을 단계별로 구분하였으며, 환경항목의 조사 및 예측·검토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시 전단계에 걸쳐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공사단계와 이용단계로 구분하여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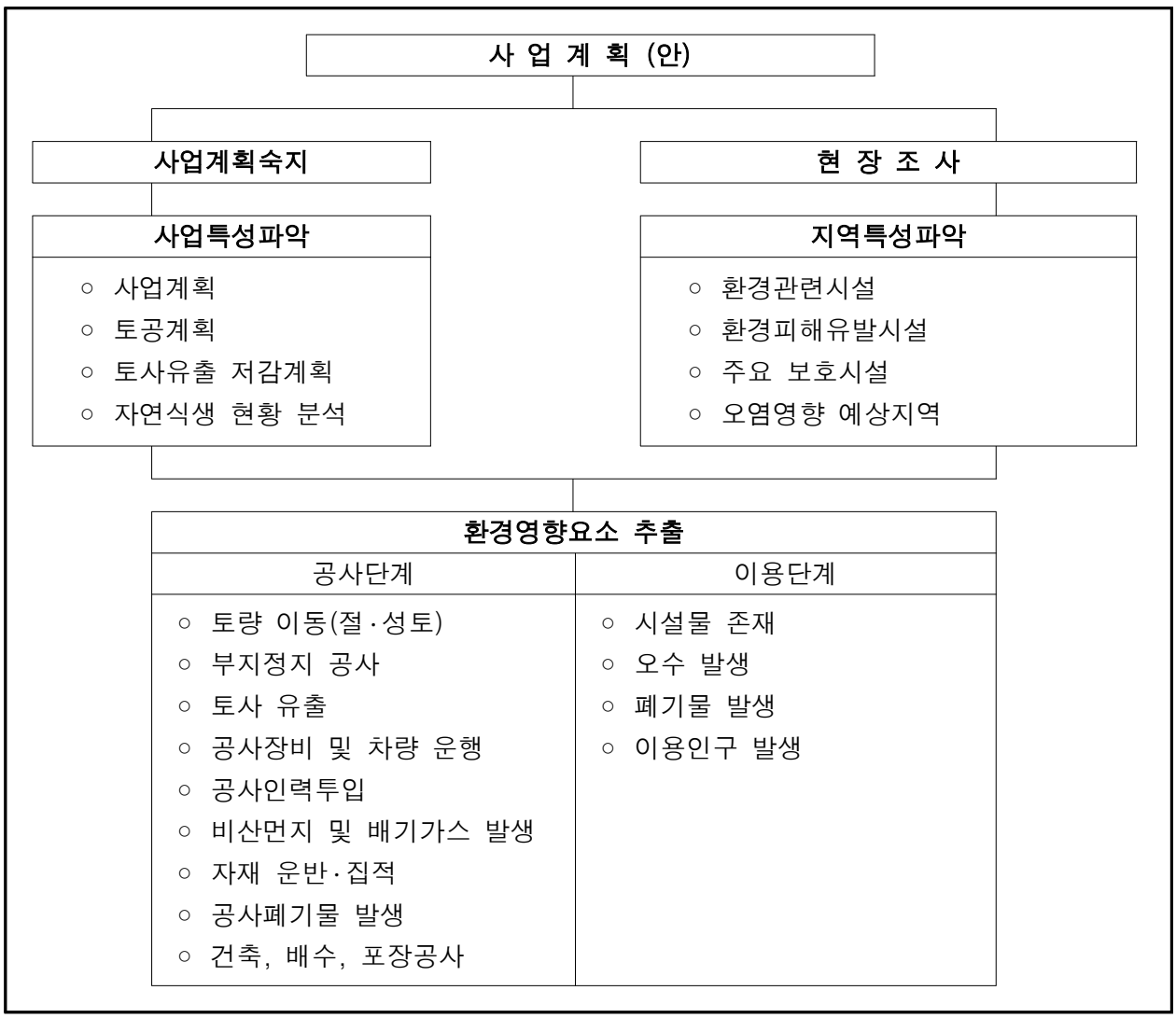

<그림 3.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모식도

3.2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방법은 Leopold가 고안한 행렬식 대조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상호평가는 상호관련성 크기를 부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부호와 숫자는 <표 3.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작성된 행렬식 대조표는 <표 3.2-1>에 제시한 바와 같음.

<표 3.2-1> 환경영향요소와 검토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단계별	평가항목 / 환경영향요소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대기질	소음·진동			
공사단계	토량이동(절·성토)	□		□	△	□	□	△			▲
	부지정지공사	△	△	□	△		△	□			■
	토사유출	△	△	□	△		△	□			■
	공사장비 및 차량운행	△				△	△	△		△	
	공사인력투입					△	□	□		□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				
	자재운반·집적						△	△			△
	공사폐기물 발생							△		□	
	건축공사	△			△			△		▲	■
	배수공사					■		△		△	■
	포장공사				▲	△	▲	▲		△	■
이용단계	시설물 존재		△						▲		■
	오수발생					△			▲	△	
	폐기물 발생						□				
	인구발생										

<표 3.2-2>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기준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3(●)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1(△)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2(■)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2(□)	악영향이 다소 있다.
+1(▲)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크기는 작다.	-3(○)	악영향이 크다.

3.3 평가항목의 설정

3.3.1 관련 규정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규정사항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평가항목 중 본 개발기본계획과 부합되는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표 3.3.1-1>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세부평가항목 관련 근거법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표 3.3.1-2>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전략환경영향평가)

구분	세부평가항목
개발기본계획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3.3.2 평가항목 선정

가.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 사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표 3.3.2-1> 중점평가항목의 설정사유 및 검토사항

평가항목			평가항목의 설정 사유	검토사항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식생 변화 및 동물상의 서식형태 변화 ○ 환경부 지정 주요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및 변화 예상	○ 식생 현황조사 및 생물상 변화 예측 ○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자연환경자산	○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상	○ 주요 자연환경자산 분포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향 및 저감방안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시설물 설치로 인한 지형 변화 검토	○ 지형 · 지질의 특성 파악 ○ 부지정지 계획 등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도로 정비사업, 로컬푸드 판매장 및 소공연장 설치으로 인한 경관 변화	○ 운영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시행후 경관 보전 대책 수립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 공사시 – 부유토사로 인한 하류부 수계 영향 파악 – 투입인력에 의한 오수 발생 ○ 운영시 – 필요 용수량 검토 – 생활오수 발생량 검토 – 우수처리계획 검토	○ 공사시 – 토사유출량 산정 및 저감방안 검토 – 생활오수 발생량 산정 및 처리방안 검토 ○ 운영시 – 용수 공급계획, 오수처리계획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공사시 토공 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 운영시 이용 차량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여부 검토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량 산정 및 영향 예측 ○ 운영시 이용 차량 배기가스 오염물질량 산정 및 영향 예측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 운영시 이용 차량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여부 검토	○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현황 및 처리대책 ○ 소음환경기준 달성 및 유지 여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오수, 분뇨, 각종 폐기물처리 계획 검토	○ 환경기초시시설의 적정성 검토

〈표 3.3.2-1〉 계속

평가항목			평가항목의 설정 사유	검토사항
생활 환경의 안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 공사 인력 투입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분뇨 발생 – 건설장비 투입으로 인한 폐유 발생 ○ 운영시 – 이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실태 파악 ○ 공사시 – 투입장비 및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대책 ○ 운영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현황 및 처리대책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사업계획으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변화	○ 사업계획 검토후 건축물 설치시 토지이용상의 변화 제시

나. 현황조사항목

○ 주요 평가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그 영향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현황조사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3.3.2-2〉 현황조사항목과 제외항목

항목			설정 사유	검토사항
현황조사항목	생활 환경의 안정성	기상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나 수질과 대기질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	○ 진도기상대의 10년간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각 기상항목별로 분석, 경향을 파악
제외항목	악취		○ 악취 관련 영향 및 변화 없음	–
	온실가스		○ 온실가스 관련 영향 및 변화 없음	–
	해양환경		○ 해양 관련 영향 및 변화 없음	–
	토양		○ 토양 관련 영향 및 변화 없음	–
	위락		○ 위락 영향 및 변화 없음	–
	위생·공중보건		○ 위생·보건 영향 및 변화 없음	–
	전파장해		○ 전파장해 영향 및 변화 없음	–
	일조장해		○ 일조장해 영향 및 변화 없음	–
	인구		○ 인구 영향 및 변화 없음	–
	주거		○ 주거 영향 및 변화 없음	–
	산업		○ 산업 영향 및 변화 없음	–

3.4 평가범위의 설정

○ 환경영향인자별 검토대상지역 중 중점평가지역은 사업지구 및 반경 300m 이내 지역으로 설정하여 검토하였으며, 광역평가지역은 진도군, 의신면으로 설정하여 검토함.

<표 3.4-1> 주요 항목별 평가대상범위

평가항목			평가대상 범위 선정사유	예측범위	
				시간적	공간적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식생변화 및 동물상의 서식형태 변화 예상 ○환경부 지정 주요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및 변화 예상	○공사시, 운영시	○주요 보호종 분포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자연환경자산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상	○공사시, 운영시	○주요 자연환경자산 분포지역
	지형및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보전가치 지형·지질 영향 검토 ○개발로 인한 자연형질 변화 ○절·성토 공사로 인한 지형 변화, 토공계획 분석 ○임야, 전·답 개발로 인한 비옥토 발생 ○토사유출 영향 검토	○공사시	○보전가치 지형·지질 분포여부 조사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 예상지역
	주요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경관	○도로 및 시설물 신축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조망점 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수리·수문)	○공사시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 영향,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예상 ○근무인력에 의한 용수 공급, 오수 처리 필요 ○시설물 조성으로 인한 비점오염물질 발생 예상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하류부 수질 영향 예상지역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대기오염물질 확산예측 기초자료로 적용하기 위한 광역지역의 관측자료	○2008~2017년	○광역 : 진도기상대
		대기질	○공사시 토공 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장비 투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 ○운영시 차량 통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반경 300m 이내
		소음·진동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예상 ○교통 소음으로 인한 영향 예상	○공사시, 운영시	○정온시설 고려한 소음·진동 영향권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공사시, 운영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적정성 검토	○공사시, 운영시	○진도군, 사업지구

<표 3.4-1> 계속

평가항목			평가대상 범위 선정사유	예측범위	
				시간적	공간적
생활환경의 안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진도군의 폐기물발생원단위 검토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영향 예상	○ 2019년 ○ 공사시, 운영시	○ 진도군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조사 ○ 사업지구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도로 및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 관련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 2019년 ○ 공사시, 운영시	○ 진도군 일원 토지이용 현황조사 ○ 사업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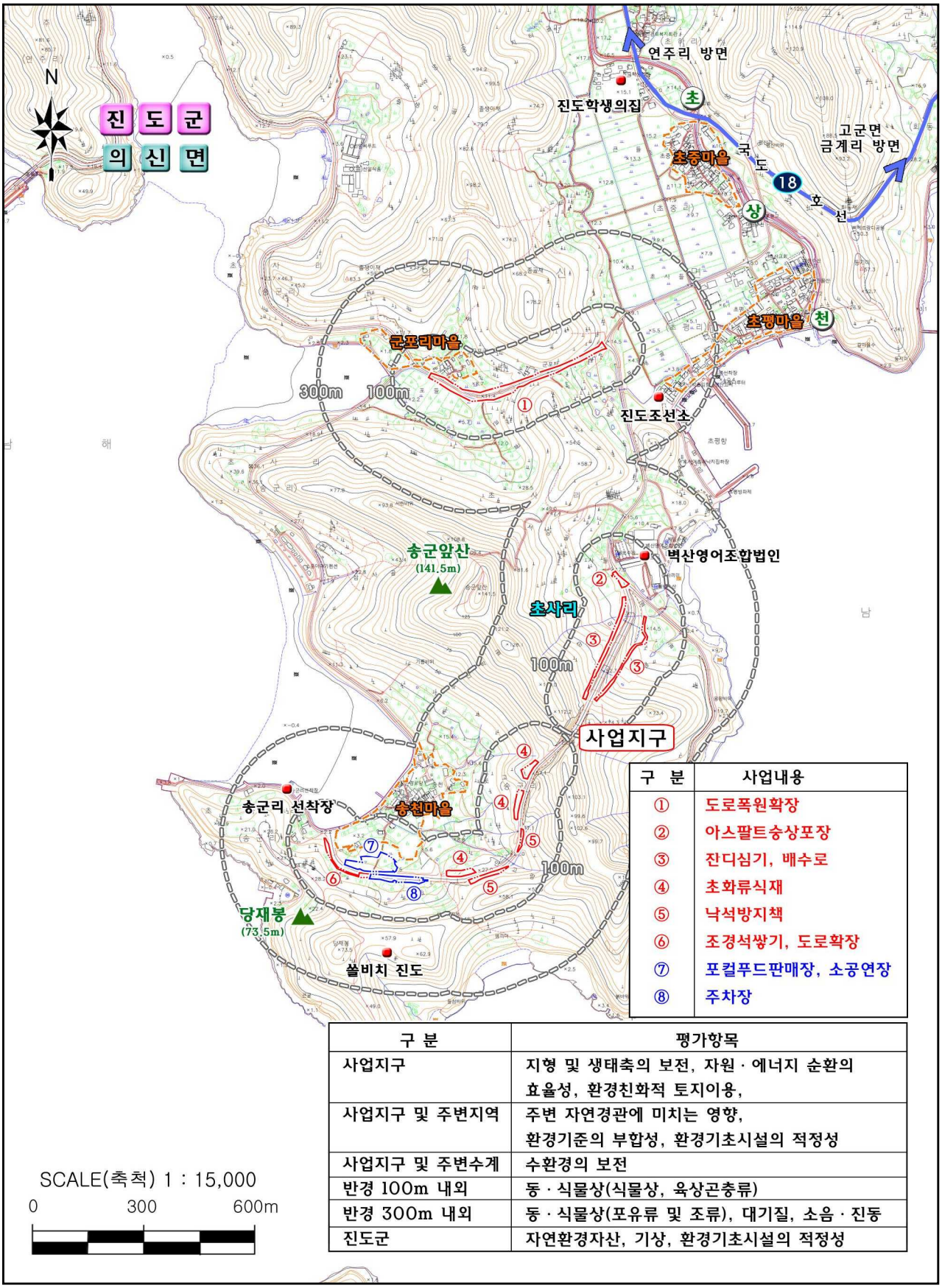

구 분	평가항목
사업지구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자원 ·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의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수환경의 보전
반경 100m 내외	동 · 식물상(식물상, 육상곤충류)
반경 300m 내외	동 · 식물상(포유류 및 조류), 대기질, 소음 · 진동
진도군	자연환경자산, 기상,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그림 3.4-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3.5 평가항목별 방법 설정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표 3.5-1>에 제시한 바와 같음.

- 현황조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평가할 계획임.
- 영향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사업지구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보전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함.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평가항목별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영향이 예상될 경우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표 3.5-1> 평가항목별 방법 설정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조사내용 - 육상·육수 동·식물상 현황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반경 300m 이내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 현지·탐문조사 및 문헌조사 ○ 현지조사 - 채집, 분류 및 동정 ○ 탐문조사 - 지역 주민 탐문 실시 ○ 문헌조사
	자연환경자산	○ 조사내용 - 주요 자연환경자산 분포 현황 ○ 조사범위 - 진도군 및 의신면, 사업지구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 현지 조사 및 문헌조사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조사내용 - 지형·지질 현황 - 특이지형, 보전가치 지형·지질 현황 ○ 조사범위 - 진도군 및 의신면, 사업지구 ○ 조사방법 - 현지조사와 자료조사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 지질에 미치는 영향 여부 분석 ○ 지형적 입지 적정성 검토 ○ 지형변화 평가 ○ 토공 계획 분석 ○ 비옥토 발생 ○ 토사유출 영향 분석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조사내용 - 경관상 보전가치지역 분포 현황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요 조망점 ○ 조사지점 -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정도,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변화 예측 ○ 사진촬영을 통한 경관변화 시뮬레이션 실시

<표 3.5-1> 계속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환경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조사내용 – 유역 수계 현황 – 수자원 이용 현황 – 오염원, 환경기초시설 현황 – 수질 현황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관련 수계 ○ 조사방법 – 현지조사, 자료조사	○ 공사시 –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예측 • 홍수량(NRCS 방법) 산정 • 토사유출량(수정범용토양손실공식(RUSLE)) 산정 – 공사 인력에 의한 생활오수 발생 영향예측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제제2018-153호」 원단위 적용 ○ 이용시 – 오수 발생으로 인한 영향예측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국지기상 조사 – 과거 10년간 기상 통계자료조사	○ 기상통계연보(2008~2017), 기상청
		대 기 질	○ 조사내용 – 대기오염원 분포 현황 – 토지이용 현황 – 대기질 현황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시설 일원 ○ 조사방법 – 현지조사, 자료조사	○ 공사시 – 공종별 공사장비 투입계획,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일원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예측 ○ 이용시 – 이용 차량 계획 파악 – 주변 교통량 파악
		소음·진동	○ 조사내용 – 소음·진동 발생원 현황 – 소음·진동 현황 – 주변 정온시설 현황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 정온시설 ○ 조사방법 – 현지조사, 자료조사	○ 공사시 및 이용시 소음·진동 영향예측 ○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에 대한 예측 평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조사내용 – 진도군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 ○ 조사범위 – 진도군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환경기초시설 설치 계획 검토

<표 3.5-1> 계속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생활환경의 안정성	자원 ·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조사내용 –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 조사범위 – 진도군 및 의신면, 사업지구 ○ 조사방법 – 자료조사	○ 공사시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예측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발생 – 건설폐기물 발생 ○ 운영시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예측 – 생활폐기물, 분뇨 등 발생
사회 · 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조사내용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 사업계획, 관련계획 검토 ○ 조사범위 – 진도군 및 의신면, 사업지구 ○ 조사방법 – 현지조사와 자료조사	○ 사업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 영향예측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미실시 근거

○ 본 계획은 사업계획 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였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사업면적	27,704㎡

제5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계획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 본 사업 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진도군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이용하여 공개함.

○ 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14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함.

5.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수렴 계획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준하여 실시하고 또한,「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준하여 실시할 계획임.

<표 5.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수렴계획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	○ 게재장소 – 진도군청 홈페이지 (https://www.jindo.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 게재기간 – 14일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초안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준하여 의견수렴 실시 – 공람기간 : 14일 – 신문공고 : 지방일간신문 2개소 각 1회 이상 –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 ○ 관계기관 의견수렴 – 관할시장·군수·구청장 – 승인기관의 장 – 협의기관의 장 – 유역·관할지방환경관서의 장 –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30일 이내 의견 통보	○ 초안 공고·공람 – 14일 ○ 신문공고 – 지방일간신문 2개소 각 1회 이상 ○ 주민설명회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준하여 의견수렴 실시 ○ 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승인기관 : 전라남도청 건설도시과, 도민소통실 – 관할 시 : 진도군 지역개발과, 환경산림과, 의신면사무소 – 협의기관 및 관할지방환경관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표 5.2-1> 계속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의견수렴계획
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주민 30명 이상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주민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최할 예정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	○ 게재장소 - 진도군청 홈페이지 (https://www.jindo.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 게재기간 - 14일 이상